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60호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의 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54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1년 10월 25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

1. 보증금의 납부 금액

가.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(기존 우편취급국)

위탁계약 체결 업무		보증금액
필수업무	우표류 판매, 수입인지 판매, 우편물 접수,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	해당 우편취급국의 최근 3년간 우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	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·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·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전반업무	위 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☞ 보증금 산출방법 :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(후납,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)

나. 신규 우편취급국

위탁계약 체결 업무		보증금액(단위 : 만원)				
		특별시	광역시	시	읍	면
필수업무	우표류 판매, 수입인지 판매, 우편물 접수,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	4,000	3,000	2,000	1,000	400
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	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·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·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8,000	6,000	4,000	2,000	800
전반업무	위 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12,000	9,000	6,000	3,000	1,200

☞ 읍/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/농 복합 형태의 읍/면 (시 지역에 속하는 읍/면 지역) 지역을 포함함

※ 단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탁계약 체결 업무		보증금액(단위 : 만원)		
		시	읍	면
필수업무	우표류 판매, 수입인지 판매, 우편물 접수,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	2,000	400	200
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	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·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·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4,000	800	400
전반업무	위 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	6,000	1,200	600

2. 보증금 납부 방법

가.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) 현금 납부
- 2) 보증보험증권 제출
- 3) 재정보증서 제출

나. 필수업무 및 환·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)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
- 2)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

다.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) 보증금액의 1/3은 현금 납부, 2/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
- 2) 보증금액의 1/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, 2/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

※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,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.

3. 시행일

가. 신규 우편취급국(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포함) : 2011년 10월 00일
나.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: 계약기간 갱신 시와 위탁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시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54호 (2011.10.4.)는 폐지한다.